

제42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4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8)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8)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8)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7)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4)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8)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2)
1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6)
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5)
1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9)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9457)
-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 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8)
  - 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2)
  -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 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 3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 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 4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0)
  - 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9)
  - 4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0)
  -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4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4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4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5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5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5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5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5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5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5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6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6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6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6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6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6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6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68.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6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7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7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7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73.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 **상정된 안건**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 7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 7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 7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 7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 7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 7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	7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	7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8) .....	7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8) .....	7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8) .....	7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7) .....	7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4) .....	7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8) .....	7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2) .....	7
1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6) .....	7
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5) .....	7
1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9) .....	7

---

(10시16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안건 올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만희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농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아까 아마 잠깐 여당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8월 1일 날부터 관세에 대한, 그 전에 어떤 식이든 결정을 내린다는 원칙이 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소고기라든지 우리의 주식인 쌀이라든지 또 사과 같은 과일에 대한 여러 가지……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의 의견인지 정부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의 입장에 조금 반하는 그런 쪽의 뉘앙스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개별 개별 법안을 다루어 가지고 처리하기보다는 그 관세 협상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더 종합적으로 여기에 농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농촌과 농민 또 분야별로 축산이나 과일 이런 쪽의 분야를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 정리한 그런 패키지로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면 오늘 개별적인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하고 통상 협상이 되는 과정에 농산물이나 또는 축산물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농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또는 그게 염려되는 내용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법안 심의 자체도 그 내용과 연계해서 검토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 걱정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염려를 더 가중시킬 우려도 있고 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개혁하고 농정을 기존과 다르게 농민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 내용들을 앞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추후에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시화되면 거기다 플러스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연계해서 지금부터 기정사실화하고 심의 자체를 보류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농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거나 더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과 분리해서 우리가 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민생 4법과 관련돼서 이미 2개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나머지 잔여 법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서 또 일정에 따라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전종덕 위원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특히 농산물 분야에 대한 희생이나 또 농산물을 다른 산업을 위해서 내주려고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걱정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다들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 농작물이 다 쓸려 내려가고 농민들이 굉장히 망연자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농업의 상징 법인 양곡법을 포함한 이런 법안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때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희생양이 될 거냐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국회가 양곡법을 포함한 이런 농업민생 4법의 후퇴 없이 개정 이런 것들을 보여 줄 때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리고 망연자실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농해수위의 위원들이 모두 같이 힘을 모아서 양곡법과 농안법 등 이런 농업민생 4법이 후퇴 없이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내용으로, 좀 더 소득 보장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심사되기를 저는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사실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한 4~5년간 계속 쟁점으로 되어 왔던 국내적인 문제로 유발되어 왔던 현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 또 기존에 이미 심사를 해서 국회를 넘어서 정부 측에 전달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심사하는 것하고 관세 협상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추후에 하자는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관세 협상이 결과가 나오는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관세 협상이 우리 농산물에 미칠 영향 분석과 그 대응 방안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잡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양곡법은 사실 쌀이지 않습니까? 쌀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쌀을 더 늘린다든가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결국은 벼 재배면적을 더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TRQ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안에, 정희용 의원 법안이나 또 우리 민주당 의원 법안에 보면 벼 재배면적 조정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심사되고 통과돼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법안대로 심사했으면 좋겠고.

또 양곡관리법에서 사과라든가 원예작물이라든가 가격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수급 문제, 수입이 만약에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들어온다 하면 결국 수급 문제 일 텐데 그러면 농가소득 문제가 아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심사돼서 준비가 돼 있어야 좋을 텐데, 이게 우리 정부가 준비해서 실행하는 유예기간이 한 1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오히려 농가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관세 협상 대응 전략하고 이 법안 심사는 분리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패키지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법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던 부분들은 혹시나 이번 관세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또 농민에 대한 어떤 손실이나 피해를 줄이고 만약에 그게 발생했을 때는 현재 상황이 더 부족하지 않겠냐, 부족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그런 제안이 됐다는 것은 꼭 밝혀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님.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강형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식품부차관입니다.

오늘 양곡법이라든지 농안법, 중요한 법 심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 측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고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가능하면 수용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감사합니다.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8)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8)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8)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7)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4)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8)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2)
1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6)
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5)
1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9)

(10시28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8항까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양곡관리법 조문이 1번에서 부칙까지 19개 조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9번까지 수석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쟁점 정리하고 또 2차 나머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고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세 차

례 의결이 되었으나 두 차례 재의 요구가 있었고 한 차례 임기 만료 폐기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4~6페이지까지 보시면 개정안의 항목별로 정리한 표인데 음영 표시한 내용이 종전 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법률의 목적에 관한 부분으로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언급한 부분은 소비자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입법 목적의 보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번입니다.

밀·콩의 비축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장식 의원님 안과 같이 매입가격을 평년가격으로 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윤준병 의원님 안 등이 종전 대안과 같은 내용인데 이러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번,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제도의 대상을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고 계획사항 등을 확대하며 또 이에 대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 및 국회 상임위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종전 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수급계획과 또 양곡 전체에 대한 수급계획을 하나의 계획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를 별도의 계획으로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아 두 계획을 분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4번의 경우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역시 종전 대안과 같은 내용으로 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지원 같은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5번, 수입양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은 TRQ와 또 이의 시장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대체적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정안 별로 정책 수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종전 대안에는 이원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6번,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등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개정안이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서 상향 입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 대안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전 대안과 같이 생산자 대표의 일정 비율 참여를 규정하되 위원회 구성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7번, 정부관리양곡 매입·판매가격 등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는 동 위원회의 법률 상향 입법에 따른 것으로서 종전 대안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금주 의원님이 제시한 안과 같이 심의 대상을 매입에 관한 사항에만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8번,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종전 대안과 같은 내용으로서 사전적 수급 조절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쌀 공급 과잉구조의 심화나 재정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약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초과 생산량이나 미곡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미곡의 매입 등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9번, 시장격리 조치의 법적 근거 정비에 관한 규정은 국고채무부담행위 성격이 있는 현행 시장격리 조치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종전 대안에도 있던 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측이 이에 대해서 사전 보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77페이지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법률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윤준병 의원님 등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조항을 보시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여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자의 이익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밀·콩의 공공비축 근거 상향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님 등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미곡 외에 밀·콩을 상향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신장식 의원안에 있는 가격 문제는 시장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3번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제도 확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윤준병 의원님 등이 제안하신 내용을 수정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8페이지를 보시면 양곡의 수급관리를 양곡과 정부관리양곡, 2개로 나누어서 각각 수급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의원님들이 주신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여기에도 대해서도 저희들이 윤준병 의원님 등이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8페이지의 제일 우측 표에 보시면 다른 내용은 수용을 했고요. 다만 ‘자료제출 요구’라는 단어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 내용도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29페이지의 9조의4 내용도 저희들이 거의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내용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수입양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원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다만 수입 중단이라든지 판매 물량, 판매 용도 등을 명시해서 하게 되면 분쟁이 생깁니다. 지금 미국하고도 분쟁이 약간 생겨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은 3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박덕흠 의원안과 유사하고요. 전종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1조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수입을 중단해야 된다든지 이원택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료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36페이지입니다.

박희승 의원님이 제안하신 해외원조용 방출을 중단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국제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준병 의원님 등 제안하신 내용을 수정해서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내용은 4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대부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가격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시면. 이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44페이지에 여기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은 이게 지금 농안법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신장식 의원안 3호입니다. 제2조 8호에 따른 적정가격의 고시, 16조 3항 및 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 여부, 매입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판매할 계획은 심의를 받습니다마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 지금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안을 수용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정부관리양곡 매입·판매가격 등 심의 의무화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문금주 의원님 안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판매가격이라든지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주 하게 되고 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제일 오른쪽의 문금주 의원님 안입니다. 이걸 수용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칸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등이 제안한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저희들이 현행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강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윤준병 의원님 등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전종덕 위원 잠시만, 윤준병 의원님 안을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등이……

○전종덕 위원 아니, 지금 달라요. 55페이지, 어디 걸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기본은 윤준병 의원님 등이 제안하신 거고요. 수석께서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전종덕 위원 윤준병 의원님 한 분밖에 안 내셨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71페이지 보시면 조문별로 나와 있고요. 여기 수석전문위원회께서 내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준병 의원님 등이 제안하신 걸 기초로 해서 수석전문위원회께서 의견을 내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73페이지 보시면, 위기 시 미국의 수급 관리입니다. 수급 관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평시가 있고요 위기 시가 있는데 1항을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 및 제16조 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 이것은 평시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미국을 격리하기 위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위기 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빼 주시면, 있어도 되지만 빼 주시는 게 훨씬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평시와 위기 시로 나누는데 평시는 앞에 있는 양곡수급계획, 위기 시는 이 조항으로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도 맞고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16조 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째 줄에도 보면 16조 제1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빼 주시면 내용과 크게, 정책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만 빼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양곡 시장격리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관련 법적 근거 정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회 의견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데 77페이지 제일 아랫쪽에 보시면 대안이 있습

니다. 8항과 관련된 겁니다. 8항에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1호, 2호, 3호가 쭉 있습니다. 1·2·3호는 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콤팩트하게 조문을 정리했고요.

지금 원래 조문에 보시면 사전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양곡수급계획을 통해서 얼마나 매입하고 할지를 이미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양곡심의위도 거치고요. 그래서 시장격리곡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좀 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9번 조항까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정부 측 의견을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조문 심사로 들어갈까요?

○전종덕 위원 77페이지에 있는 농식품부 의견대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게 있고요, 미리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일할 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이미 계획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지체 없이 미리 제출해 드려도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일하기는 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걸 바꾸더라도 저희들이 제안하신 것을 위배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보고와 제출의 차이네요.

○윤준병 위원 조문별로 심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른 의견 없으면 그러면 조문별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조문 중에 법률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0페이지 수정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1페이지의 밀·콩 공공비축 균거 상향 규정 마련인데요.

13쪽의 윤준병·송옥주·어기구·이원택·서삼석·임미애 의원안 쪽을 받겠다는 거지요? 3항 3호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2조 3항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3호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3호 미곡·밀·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격을 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종덕 위원 이것 그러면 수매는 어떤 가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원쪽을 보시면 시장가격으로 돼 있고요. 신장식 의원님은 직전 5개년 가격 중으로 해서 시장가격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뒤에 가격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14페이지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제도 확대와 관련해서 18페이지 봐야겠지요.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에 조문 나와 있네요, 23페이지까지 수정의견.

○윤준병 위원 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곡의 수급계획하고 그동안에 법제화돼 있는 정부관리양곡, 시장격리곡, 수입곡과 관련된 별도 규정으로 두고 있는 내용을 끊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든다 하는 내용까지는 좋은데, 여기 수급계획이 사전적 생산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담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실제 정부관리양곡이나 또는 비축미나 수입곡에 대한 사후처리계획에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은 수급계획에 담겨져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기타 이렇게 내용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사전적 생산 조정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양곡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처리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야 정부의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의 기본 틀이 잡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조항은 특별하게 의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윤준병 위원 그 내용만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방금 차관님께서 사후 처리 부분까지 포함하자라고 돼 있는 것 동의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비축미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특별한 이견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 보관시설 실태점검 및 종합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건데 28페이지에 보면 수정의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또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2페이지 수입양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을 지금 정부 측은 이원택·신장식·임미애 의원안을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박덕흠 의원안.....

○**소위원장 이원택** 박덕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관리, 그 안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내 미곡 시장 안정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건 되는데 법적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이게 국제적으로 충돌이 됩니다.

○**전종덕 위원** 내실 있게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쨌든 이 TRQ 물량이 들어오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지금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쓰는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중을 높이자고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지금 기준의 형태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개정하는 의미가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런데 TRQ 물량을 주는 이유는 시장에 최소한 5% 정도는 유통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작년에 유통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표현 주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뭐 내실 있게.....

○**소위원장 이원택** 조문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안 보면 'TRQ 미곡을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실 있게 관리' 이런 표현인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뭐 이 정도면.....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TRQ 물량 중에서 우리가 밥쌀용 이 외에 사료용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쓰이는 비중이 연도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저희들이 밥쌀용으로 사오는 거는 40만t 중에 4만t입니다.

○**이만희 위원** 10분의 1 정도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게 밥쌀용입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36만t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식량국장입니다.

가공용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만희 위원** 과자나 쌀과자나.....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예, 그렇습니다. 사실 41만t 중에서 4만 4000t은 밥쌀용이고요 나머지는 가공용인데 그중에서도 일부 수입쌀 같은 경우 25만t 정도만 저희가 가공용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주정용 등으로 이렇게 좀 해서 최대한 저희 국내에 영향이.....

○**이만희 위원** 그러면 40만t 중에서 평균 4만t 정도는 밥쌀용이고 나머지는 다 사료용,

가공용, 주정용 이렇게 소비한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수입 용도 자체는 저희가 가공용으로 수입을 하고요.

○**이만희 위원** 가공용으로 수입을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예,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할 때는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주정이나 이렇게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그것 한 적이 없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외에 국장님들 또는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누가 답변했는지를 모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예, 식량국장 답변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식량국장이라고, 속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국내 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TRQ 수입을 중단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국제관계 이런 것도 고려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이것은 별도로 차치하더라도 이 들어오는 물량이 국내 쌀하고 경쟁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정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사실은 사료용을 제외하고는 가공용이든 주정용이든 우리 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쌀 소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이 사료용이라는 정도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거는 농림부에 재량권으로 주게 되면 이 확대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로 명시를 해 놔야 사료용을 더 확대하고 주정용이나 가공용을 줄이고 국내 쌀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내실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견은 좋은데 매년 실태조사, 다른 의원님들이 실태조사 내용은 다 법안에 담았는데 실태조사마저도 어렵습니까? 실태조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분쟁의 소지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실태조사는 다음 조항에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다음 조항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저희들이 정부양곡을 관리하게 되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를 받고 그걸 해서 양곡수급관리계획에 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TRQ 미곡에 대한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정부관리양곡입니다.

○**임호선 위원** 정부관리양곡 내에 TRQ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미 이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내용이 그냥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가 너무 멋밋하니까 오히려 고려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어쩌고…… 이렇게 정부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하는 내용을 좀 넣으면 그냥 멋밋하게 관리해야 된다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만약에 국회에 보고만……

○**윤준병 위원** 보고만 안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안 되게…… 저희들이 사실 TRQ 관리하는 목적은 국내쌀 시장을 감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는 것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상임위 보고하라고 그러면 저희도 힘드니까요,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상황을 고려해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TRQ 미곡을 국내외 시장을 고려해서 내실 있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런 정도……

○**윤준병 위원** 관리 대책을 내실 있게 시행한다.

○**전종덕 위원** 여기 안을 좀 더,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윤준병 위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도 이해는 돼요. 이걸 하면 원래 TRQ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배치되는, 오히려 역으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비무역 장벽인 것처럼 이렇게 오인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좀 피해 가면서 우리가 관리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냥 ‘관리한다’ 이렇게보다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시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문구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구 위원** 차관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TRQ 쌀을 국내에 방출할 때 밥쌀용이나 가공용이 아닌 사료나 이런 걸로 쓸 때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제한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수요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분배해서 결정을 합니다. 특별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가공용으로 하고 또 너무 오래 지나면 주정용으로 처분하고 그렇게 됩니다.

○**전종덕 위원**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료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전종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에 사료용 등으로 이렇게, 사료용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명시해 주면 농림축산부에서도 이것이 훨씬 더 재량권이 넓어지니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국제적으로 좀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명구 위원** 그것 제한하는 게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만약에 법적으로, 왜냐하면 TRQ의 목적 자체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가 513%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 물량, 그러니까 40만 8000t을 시장에 풀라는 얘기입니다, 5%까지는. 그런데 사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밥쌀용은 4만 4000t만 사고 있고 나머지는 가공용하고 주정용,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전에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 수립을 받고요. 다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영향입니다, 이원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향. 그래서 영향을 수용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제가 받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워딩을 한번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 좋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결론은 영향…… 뒤에 보면 실태조사에 영향 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구에 보니까 영향 조사가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문안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TRQ 미곡을 국내외 시장 영향을 고려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수행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

○**전종덕 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워딩을 한번 잘 만들어서……

○**전종덕 위원** 최종안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윤준병 위원** 방향은 그렇게 하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 자구는 넘겨 주시지요.

취지나 내용은 공감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8페이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거고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45, 46, 47, 48 그다음에 52페이지까지 여기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견 없으시잖아요?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심의 대상 내용에, 뒤에 문구들이 있는데 거기 정부관리양곡 중에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서 단서 조항 있잖아요. 정부관리양곡이 국무회의 심의를, 원칙적으로는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고 올리는데 단서에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받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거는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미곡, 수확기 대책 할 때는……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심의 대상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예시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개정 조항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양곡위원

회 그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국무회의 심의 전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한다고요? 아닐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식량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렸을 때는 그런 안으로 한 번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의견 받아 가지고 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아예 넣었습니다, 정부양곡.

○**윤준병 위원** 정부양곡도 전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예, 집어넣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그게 4조 2항 2호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맨 우측 수정의견에 4조 2항 2호에……

○**윤준병 위원** 아니, 44쪽에 없는데?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수정의견 보시면 됩니다, 맨 우측에.

제6조 1항에 따른 정부양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도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빼 달라는 게 뭐였지요? 판매시기?

○**윤준병 위원** 4조가 지금 6조 1항 돼 있지요? 4조라고 그래서, 4조가 없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받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판매가격 등 심의 의무화 부분인데요. 54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금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판매시기나 가격을 조금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빼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 말씀을 위원회 때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양곡수급계획은 전부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임호선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53쪽의 당구장 표시 농식품부 의견 이 내용대로 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인데 매입은 그대로 가고 판매가격하고 판매시기를 말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계획은 받기 때문에 시행하는 시기라든지 가격 같은 거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게……

○**소위원장 이원택** 매입가격도 해당돼요, 판매가격만 해당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매입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산출되는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윤준병 위원 나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 운영될 때 보면 공공미 방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기에 적절치 않은데 정부가 오버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 부분을 정부에……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 실패한 내용이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세심한 과정을 만드는 내용이 없이 기존에 하던 내용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공비축미 방출을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물가 관리라든지 또는 현재의 시세, 가격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물가를 위해서 한다는 명분하에 방출해 가지고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적정하지 않은 수준의 시장 개입을 하거나 이런 일이 왕왕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보완 대책이 명확하면서 뭔가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판매가격이나 판매시기는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해 온 과거의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된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농정에 실패한 과거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다, 그냥 빼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양곡관리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지만 사실 위원장님이 차관님이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호선 위원 그러면 결국 정부가, 이 정책을 농식품부 의견대로 간다 하더라도 차관님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차관님이 위원장이신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판매 할 때마다 해야 되면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곡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어떨 때 하겠다고 이렇게……

○임호선 위원 전체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런 정도를 넣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준병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안을 줘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윤준병 위원 큰 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부미에 대해서 방출할 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타이밍에 해야 되고 그 내용도 가격 문제도 적정하게 해야 시장에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형성되는 거지 잘못된 개입을 하면 이상한 시그널이 돼서 이게 전체 가격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개입하고 TRQ 방출 안 해야 되는데 조짐이 있다고 해서 미리 개입해 가지고 가격 하락의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실제 여러분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이는 절차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도 생산자단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그 내용에 대한 우려들이 점검이 돼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건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이나 그해 연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도 담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식량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으로 저희 이해를 했고요. 지금 법 개정에 따라서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에서 그 16조 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돼 있는데요. 16조 1항에 관한 내용에 판매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판매계획은 공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받게끔 이번에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심의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판매계획이 뭐냐고 할 때 거기에 기본적인 방향을 어떤 때 합니다, 얼마를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을 여기다가 적어 두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판매계획에 만약에 판매시기나 가격이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안 들어간다면 사실 좀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해서는 판매가격과 구체적인 시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이라든지 양을 알 수 있는 걸 거기 16조 심의에 넣어서 그런 건 미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판매계획에 예시를 해서 거기에 판매가격이나 판매시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기본적인……

○**윤준병 위원** 등 해서 판매계획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거기서 걸려질 수 있는 장치 하나는 어딘가에는 마련해 놔야 예전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잘못된 결정이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상의해서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논의가 좀 길어지니까요……

○**임호선 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무조건 저희가 통제 쪽으로……

차관님, 진짜 정부에서 정부관리양곡을 관리함에 있어서 심의위의 심의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농식품부 의견은 현행 유지인데 지금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꼭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이나 시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어떤 행정 효율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왜 어렵다, 예컨대 24년도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가격에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의 양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시키셔 가지고 이게 심의 자체에서 빠지고 종전처럼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즉흥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문안을 좀 정리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정부관리양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생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요.

○윤준병 위원 정리해서 추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윤준병 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가 문구 정리해 가지고 제안하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랑……

○정희용 위원 내용이 숙의가 필요하면 숙의를 하고 해야 되지, 위원장님 오늘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정희용 간사님께서…… 숙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부 측, 안을 좀 정리해 주세요.

55페이지, 양곡의 수급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수정의견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그렇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7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아까 수정의견 중에 평시와 위기 시를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걸 좀 삭제해 달라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평시와 위기 시를 구분해서 조문을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고 수석전문위원하고 좀 맞춰 주세요.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이걸 위기 시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 난 용어가…… 가격 폭락이 위기라고 법상 용어에 넣는 것이 옳은지 이 워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물론 평시하고 다른 특수한 상황임은 틀림없는데 이걸 위기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가는 것이 옳은지, 법 문안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용어 문제는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임호선 위원 저는 바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시라고 하면 이게 언제가 위기냐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윤준병 위원 위기라는 표현이 조금…… 그 워딩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위기라는 게 어떤 상황을 두고 한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사실 저희들이 쓰는 위기는 국내외적인, 완전히 무슨 외국에서 값이 폭등했다, 공급망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기는 평시의 대책이 안 되고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급 불안이라든지 가격 불안정 정도로 하면 훨씬 많은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윤준병 위원 용어를 좀 한번 좋은 용어로 바꿔 주세요. 위기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차관님, 이거는 단순히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예컨대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의 수급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이건 절차를 둬야 돼요. 16조의2 이 조항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앞쪽에 있는 저 위원회에서 발동 요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 조항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사전적으로 장치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 조항을 발동하기가 어렵다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위원님, 저기 1호에 보시면 1호는 생산량이고요 2호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가격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데 미리 어떤 조건인지는 법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조항 자체를 이렇게 규정을 할 때 이 조항이 작동되는 요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어떻게……

○윤준병 위원 용어를 좀 정리하고……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마지막에 조문 정리하겠습니다.

75페이지, 9번 항 국고채무부담행위 법적 근거 정비인데요. 이것은 77페이지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 농식품부 대안으로 수용해 달라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양곡위원회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냥 제출해 드리는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윤준병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전적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느냐 여부가 하나 있고 하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하는 내용은 이제 절차적인 내용을 사전에 좀 해서 치유했다 하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위반했거나 왜곡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 이걸 치유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실제 여기에 ‘매입가격, 매입 규모 등’까지는 좋은데 ‘농협 등에 대한 지원 규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원 규모’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거기에는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 이렇게 명확하게 받고.

그다음에 ‘제6항에 따른 지원방법’ 이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연도별 발생한 원금, 이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에 반영돼야 될 채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채무부담행위를 일탈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꼴이 돼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위법적인 요소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께서는 반대 의

견이시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입장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내용은, 내가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농해수위 입장 법적 검토 의견 내고 그 내용 받아 가지고 기재부 의견 그대로 본 따 가지고 감사원 내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의견이 왔으니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회계 감사할 때, 결산 감사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와요, 채무가.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안 들어오거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안 들어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안 받은 꼴이 되거든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하게 보고되고 기입돼서 이게 명기가 돼야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산에 반영된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 이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 문제도 해소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말씀 좀 수정해서 반영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윤준병 위원** 아니요, 수정……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지원 규모를 보조·융자, 지원금액하고…… 3호에 원금, 이자 예산에 반영 등 그걸 집어넣자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원금, 이자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윤준병 의원님 안에 있는 것을 넣는 걸로 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팬찮으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전종덕 위원** 정확히 봐야 알 것 같아요, 문구를.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좀 궁금해서요.

차관님, 제가 궁금해서……

양곡을 농협에서 수매하고 정부양곡은 어디에서 보관하지요,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정부양곡 창고가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지정돼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게 옛날에 양정계에서 이렇게 해서 정부양곡 수매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대부분은 농협 창고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협 창고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것도 온도 잘 맞추고 이렇게 해서 보관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왜냐하면 그게 상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많이 그런

건 아닌데 냉장, 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선교 위원** 그런데 농협 같은 데 보면 그것을 다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매각하고 막 그러더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 소유는 정부 것입니다.

○**김선교 위원** 소유는 정부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형식적으로는 농협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돈을 대 준 거고요, 정부 재원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곡물협회라는 데가 또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곡물협회는 주로 수입·가공하거나……

○**김선교 위원** 곡물협회는 또 다른 거예요, 기능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요, 같은데 양곡 보관하거나 가공도 있고 거기는 또 수입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농협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선교 위원** 내용 좀 해 가지고 역할 그것 한번 설명을……

○**소위원장 이원택**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지금 야당 측에서 점심 일정이 있고 오후 2시에 또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이 심사를 점심 일정 전까지 농안법이니 뭐니 심사를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질문이나 토론을 다 하도록 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다시 잡든지……

○**정희용 위원** 오늘 기존의 일정 공지가 오전만 나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잡든지 아니면 전체회의 전에 한번 잡든지 이렇게 해서 30일 날인가, 29일 날인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9일 날은 오전에 해양소위가 있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우리는 저쪽에서 하면 되지, 장소를 저쪽에서 하면 되니까.

○**강명구 위원** 언제, 29일이요?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결정해야 돼요. 정희용 간사님이 일정이 계셔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도 하시고 무엇도 하시는데 시간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오전 중에 양곡법 심사는 일단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끝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심사 날짜를 다시 잡으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소위원장 이원택 예.

○ 전종덕 위원 차관님, 제가 지금 법안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73페이지의 수정의견대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 전종덕 위원 16조의2 2항 이건 수정의견대로 하시겠다는 건데 ‘양곡위원회는 3조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재배면적 관리 목표 달성을 여부를 구분하여 1항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것 무슨 뜻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법안이 없어 가지고 이 조항을 모르겠거든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겁니다. 저희들이 미리 재배면적 감축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감축을 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안 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목표를 못 채운 경우, 그 경우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 전종덕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재배면적 감축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와 달성하지 못했을 때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 전종덕 위원 어떻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해 보고, 이제 벼를 심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65만을 심어야 되는데 65만을 심은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67만을 심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 전종덕 위원 심의할 거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 윤준병 위원 조금만, 제가 같은 내용이어서.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이, 이렇게 혼선을 빚잖아요.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하니까 본래 이 문구를 넣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 윤준병 위원 이 취지는 정부가 사전적 생산 조정에 성공했을 때하고 실패했을 때하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전적 생산 조정에 성공했을 때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제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시장 개입해야 될 룸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사전적 생산 조정이라는 수급안정 대책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면 보다 엄격하게 정부가 매입을하거나 이걸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구별해서 넣자는 취지였는데 그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전적 생산 조정에 예를 들면 성공했을 때 하는 내용에는 그게 지금 양곡위에 따라서 관리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해서 시행할 수 있다,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야 이 내용의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 윤준병 위원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 내용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지금 전종덕 위원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내용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호선 위원** 같은 조항이라서.

그렇다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매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법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달리 정하는, 이건 그냥 양곡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정도로만 담아도 정부에서 일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 사항으로 넣었고요. 법에 이런 근거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그런 데……

○**전종덕 위원** 저 질문,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을 못 했을 경우에 시장격리를 발동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목표를 달성 못 하면……

○**윤준병 위원** 발동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격리를 하냐 마느냐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재배면적 감축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소위원장 이원택** 뒤의 조항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니고요. 나중에 뒤에 조문이 나옵니다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종덕 위원** 이게 상당히 오해가 있는, 어쨌든 재배면적 감축을 강행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시장격리를 안 하고 목적 달성을 안 하면 시장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말인가요? 제가 이 의미 자체를 완전히 이해를 못 하겠어서……

○**문금주 위원** 그건 아닌데…… 윤준병 위원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전종덕 위원** 아니요, 이 문구는 굉장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장 개입을 할 때 요건이 물론 수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예를 들면 3~5% 가격 하락폭이다, 원래 수급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이, 이렇게 정했으면 그 내용이 정부가 열심히 잘해서 사전적 생산 조정을 잘해 가지고 수급을 잘 맞췄는데 다른 변동 요인에 의해서 초과량이 생산됐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정부가 생산 조정에 실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제 초과량이 훨씬 많이 발생해서 가격 하락을 유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수급위원회에서 가격 하락폭하고 초과생산량의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비율을 정하는 기준, 가격을 우리가 생산 조정에 성공했을 때하고 실패했을 때하고 좀 달리 정할 수 있다. 생산 조정을 잘하면 가격 하락폭이 좀 커도 정부가 책임을 다했으니까 괜찮은데 정부가 책임을 다 못 하면 시장 개입을 더 엄격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기재부가 사전적 생산 조정의 예산 투입과 관련된 내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인책을 이런 내용으로 넣어 놔야 정부가 사전적 생산 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담은 거예요.

○전종덕 위원 일단 윤준병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들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재배면적 감축 여부,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 개입을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문구는 굉장히 논란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금주 위원 재배면적을 줄이는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 가는지 모르겠네요.

○전종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문구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그렇게 하셨고.

○소위원장 이원택 문구를 약간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적으로 재배면적을 잘 조정해서 쌀의 수급이 안정화가 됐을 때 이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급이 안정화가 되고 가격도 적정하게 되면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부 측에서 특히 기재부가 예산을 적게 줘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만약에 인구 감소 추세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예산을 적게 줘서 사전적으로 재배면적이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됐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총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책임을 좀 더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초과생산량이라든가 가격 하락에 대한 발동 조건은 사후에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 아직 심사 안 했는데 뒤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심사하고 난 다음에 이 조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취지와 이 문구의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의도하고 좀 달리 차이가 있고……

○소위원장 이원택 예,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종덕 위원 어쨌든 목표 달성이이라는 걸 넣어 놓으면 감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론은. 마지막에 뒤의 것까지 다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번부터 마지막까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0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은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양곡가격안정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 법이 아닌 농안법에 일괄해서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11번, 공공비축양곡 제도 개선에 대한 개정안들은 종전 대안과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서 비축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및 수급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매입물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특히 밀의 비축에 대한 재원에 관해서는 9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농안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밀산법 육성법의 해당 조항을 부칙의 타법 개정이나 위원회안 제안을 통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12번,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의 구체화 및 폐지에 관한 내용은 여기 대다수의 개정안들이 종전 대안과 같이 인용조항 현행화를 위한 단순 자구 정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추가적으로 윤준병 의원님께서 조정의무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계시고 전종덕 의원님께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계시므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곡관리법과 같이 배부해 드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소위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전종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기본직불금 신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폐지에 관한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사항에 관해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과 이원택 의원님 안이 서로 약간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4페이지부터의 내용도 함께 좀 논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다시 양곡관리법 소위 자료로 돌아와서 110페이지 13번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은 벼 및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또 논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항에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 대안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략작물직불제도 활용을 비롯해서 다른 지원 시책도 가능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14번,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도 대부분 종전 대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다만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 종전 대안과 달리 수급조절 지원을 양곡수급안정대책과 연계하고 있으므로 이런 관련 사항 연계를 심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15번, 공공수급미곡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전종덕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미곡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또 친환경 농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영향과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16번, 미곡수급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도 종전 대안에 역시 있던 내용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다만 과태료 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17번,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은 역시 또 종전 대안에도 있던 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고 체계 자구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18번,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근거 마련도 종전 대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역시 자구 정리 내용만 포함된 수정의견인 1안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해서는

국산양곡에 한정된 지원이 통상 규범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점을 반영한 2안을 두 가지의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부칙은 하위법령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한 1년 정도 두시면 될 것 같고 함께 심사하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의 시행일도 연계해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양곡은 지금 농산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농안법에. 그래서 거기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안법 논의하실 때 다시 논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고요 소관만 농안법으로 옮겨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94페이지 공공비축양곡 제도 개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양곡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국제 기준보다 확대하거나 4분의 1 이상을 매입하거나 국내 소비량의 4개월 이상 한다고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FAO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아니고요. 17%, 18%를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얼마를 하라고 하는 거는 돈도 많이 들고요,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이거는 양곡수급계획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더 삽시다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재정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수급계획하고 오히려 거꾸로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수급 안정이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 구체화 또는 폐지입니다.

그 내용은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16조의2입니다. 저희들은 이원택, 박희승, 신장식 의원님 등의 제안을 수용하고요. 다만 윤준병 의원님께서 2항부터 3항, 4항, 5항, 6항까지 쭉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올해 여기에 좀 유사하게 했지만 현장에서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안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또 법에다 강조하게 되면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만일을 위한 조항으로 놔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윤준병 의원님 말씀은 맞으신데 그 이하 조항은 의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는 법 조항이 114페이지부터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다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지원을 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서 재배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문대림, 송옥주, 이원택 의원님 등이 발의한 그 안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공공수급미곡의 관리·운용입니다.

전종덕 의원님께서 계약재배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공비축이 없다면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비축을 충분히 운용하고 있는데 또 계약재배를 한다면 재정 수요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양곡유통업의 육성 근거 마련도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내신 2안…… 페이지는 1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 같은 경우에는 국산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차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수 양곡으로 해서 여기에 친환경이라든지 이렇게 규정하는 걸로 하는 2안을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부칙에 대해서는 준비할 게 많아서 1년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81페이지부터인데요, 조문 심사로 가면서 의견을 받을까요, 포괄적으로 할까요? 조문 심사를 하면서 받지요. 그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시간이.

(「예」 하는 위원 있음)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안법에서 규정을 담자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미곡은 농산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농안법에.

○**전종덕 위원** 저는 일단 반대의견이고요. 물론 농안법은 개정안이 농산물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도 양곡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 지난번에 두 번 행사됐던 거부권 법안에는 공정가격(기준가격)으로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양곡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 사실은 양곡법의 핵심이 가격안정을 통한 소득 보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빠진다는 것은 진짜 앙꼬가 빠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우법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축산종에 한우도 다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특수성을 살려서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처럼 농산물을 일괄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양곡은 양곡의 특수성을 발휘해서 가격안정제도는 양곡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하고. 지난번 거부권 행사되기 전에 통과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그 기준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안정제도를.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안법에서 통과가, 양곡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예산집행은 농안기금으로 합니까, 양곡법 양곡기금으로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은 재정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법에 들어가기 때문

에 농안기금으로 하지만 그 재원은 사실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입을 받아 오든지 해서 재원 마련은 다시 마련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농안기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종덕 위원 지금 양곡법에 있는 건 어떤 기금에서 해요? 양곡기금에서 할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전종덕 위원 지금 양곡법에서는 어느 기금에서 하시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은 가격안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종덕 위원 아니, 쌀 수매하고 이럴 때 하잖아요. 가격안정제도는 없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가격안정제도가 없는 게 현실이고 이거를 지금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이원택 위원장님 걱정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농안법에 전체를 뚫어서 하는 것도 일견 의미가 있다고는 보이는데 다만 호주머니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쪽에 있으면 양곡특별회계 가지고 할 거고 농안법에 가면 농안기금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호주머니에서 어떻게 넣을 것인지. 오히려 이쪽에 넣는 것이 양곡특별회계 내용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어서 그거는 재정 당국의, 기재부의 입장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확인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식량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법에 두면을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양특회계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검토했는데 양특회계의 특성상 기업회계입니다. 그래서 양특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농민들한테 대한 보조금 그런 성격으로 양특회계 지출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게 된다면 재원 자체는 농안기금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전입받거나 현재 그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에서는 의무 매입을 염두에 둔 주 골격으로 하고 가격안정제는 농안법의 전체 틀을 뚫어서 하되 재원 문제는 농안법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만약에 양특회계……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해도 재정을 전출받거나 일반회계에 투입하거나 이런 내용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하게 된다면 법을 수정하든지 해서 전입을 받고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지 사실……

○윤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면.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은 이 법안 조항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아까 양특회계의 회계규칙상 이 차액 지원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식량국장님 답변이?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농안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부 회계규칙상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양특회계냐 농안회계냐가 아니라 그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원이 확보돼서 지원된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아까 전종덕 위원님 주장 말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선 위원** 정부 측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종덕 위원** 여기에 명시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 재원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농안기금에서 전체를 포괄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도 의지가 강하니까 농안법에서 다시, 공정가격이냐 기준가격의 내용이냐 이거는 농안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가격이나 이런 것이 빠져 버리게 되면 양곡법이 진짜 알맹이가 빠지는 것으로 되잖아요. 어쨌든 가격 보장을 통한 소득 보장이 양곡법의 내용인데……

○**소위원장 이원택** 양곡법의 핵심은……

○**전종덕 위원** 그래서 그 가격안정제도는 양곡과 관련해서는 양곡법에 담는 것이……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저희가 벼 사전재배를 하는 것 하나,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것 하나, 발동 조건이요. 뒤에 가 보면 그게 양곡법……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됐을 때, 초과생산량이나 가격이 하락됐을 때 의무매입하는 게 기존의 법에다가 우리가 플러스알파해서 차액 지원을 집어넣었잖아요. 이 차액 지원은 농안법으로 보조하는 게 회계규칙상 맞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농안법 심사하실 때 기준가격이나 공정가격이나 그런 걸 다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종덕 위원** 아니, 저는 좀 더 검토를 해 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정리를 해서 아무튼…… 만약에 농안법 심사 당시에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면 이 법안을 그때 또 한번 더 심사를 한다든가 개정안을 내서 심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다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다음에 94페이지 공공비축양곡 제도 개선이지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전종덕 위원** 이것은 정부 입장으로는 기존의 매입물량 그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비축 물량 40만t 하다가 45만t 했는데 그 45만t 중에 가루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루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비축미는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 논의할 때도 공공비축미를 늘려야 된다

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저희가 국제기준보다 더 상향시키자라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4분의 1로 냈습니다만 이원택 간사님이 내셨던 국제기준보다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공비축 물량보다는 더 확대되는 물량을 정해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현행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존 법에서 뒤로 물려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기준보다 확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공공비축미도 있고 격리곡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양곡수급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45만t을 사야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해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영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쌀을 오히려 공급 과정으로 만드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공공비축미를 반영해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늘려라 이게 핵심이고, 공공비축 물량은 자급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과될 때도 늘려야 된다는 걸 전제해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늘려 드리고 싶은데 많이 늘려 놓으면 나중에 또 결국은 못 먹고 사실 이게 가공용으로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걸 미리……

○**강명구 위원** 비축을 늘리면 보관이나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를 들면 10만t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관까지 합쳐서, 보관 비용 다 합쳐서 금액이 한 3000억 됩니다, 3000억.

○**소위원장 이원택** 국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기준은 아니고요. FAO에서 권고하는 것은 17~18%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참고에 있는 것은 훨씬 많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국제기준보다 확대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미 정부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잖아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 문구를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국제기준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이 참고는 합니다, 비축미를 살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 국제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사라 그러면……

○**소위원장 이원택** 아, 그게 FAO의 권고사항이지, 국제기준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아닙니다.

○**강명구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전종덕 위원님께서 25% 하자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를 들면……

○**강명구 위원** 여기 신장식 의원은 보니까 3분의 1이니까 한 33% 더 늘리자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장식 의원님의 3분의 1로 늘리자, 33%까지 늘리면 재정이나 보관료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은 저희들이 40만t이 기준이면, 3분의 1이면 100만t입니다. 그러면 60만t이 남게 되고요. 그걸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1조 8000억입니다.

○**강명구 위원** 그걸 얘기하셔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매입물량을 국제기준보다'라고 했는데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확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해서 적정한 물량을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매입물량을 국제기구 등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적정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하는 적정한 게 아니니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전종덕 위원** 지금 국제기준보다는 못하는 거잖아요, FAO 권고보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더 많습니다.

○**임호선 위원** 더 많다는 거잖아요.

○**윤준병 위원** 더 많다니까요. 지금 더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 창고에 항상 많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의 핵심은 더 확대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종덕 위원** 아니, 중요한 문구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전종덕 위원** 어차피 오늘 통과시킨다 하니까요.

○**정희용 위원** 아니, 통과시킨다는 게 강제로 정해 놓고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이야기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고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해야지.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FAO의 권고 등,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서 매입물량을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임호선 위원** 국제 권고는 언급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호선 위원** 아니, 우리 법이 국제기준이 달라진다고 거기에 따를 의무가 뭐가 있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12번, 101쪽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 구체화 또는 폐지.

○**전종덕 위원** 제가 이것 법안 냈었는데 다 기억하시지만 작년에 재배면적 강제 감축으로 인해서…… 이게 3년 전에, 2022년에 만든 거지요. 그래서 3년 전에 만든 기준으로 강제로 재배면적 감축했던 것이 얼마나 현장에 큰 혼란을 줬고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반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다 하셨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다 넣어 놓으셨던데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현재 조항에서 조정의무 제도를 '의무'를 삭제하고 '조정 제도' 정도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 안을 반영하

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강제로 한 것이 문제였고 의무는 강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제로 줄이는 것에 너무 집중해 가지고 작년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무라는 조항을 빼고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하면서 재량으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팬참을 것 같은데요, 차관님?

○임호선 위원 그러면 그 표현을 어떻게, 말씀 한번……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의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의무를 빼는 거지요.

○전종덕 위원 현행에서 의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거지요.

○임호선 위원 재배면적 조정 부과? 말이 안 되잖아요.

○전종덕 위원 왜 안 됩니까? 조정할 수 있는 건데, 됩니다.

○강명구 위원 차관님,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이라는 게 선제적 수급 관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를 하면 벼 재배 소득보다 더 높은 농가소득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것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성과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어떤 면에서의 성과를……

○강명구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정책에 호응을 하려면 농가소득이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야 그것을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선제적 수급 방침에 대해서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타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더 올리겠다라고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양곡관리법의 핵심인 그 내용이 맞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제를 하는 경우 지금 총 예산 2400억 정도가 있는데 그 예산을 들이는 범위에서는 면적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없이 더 줄이게 되니까 농업인들이 시군에 돈을 달라, 정부가 못 주니까, 그래서 좀 호응이 없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면 쌀보다는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강명구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제가 회의 운영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107페이지의 원안 현행에 보면 의무라는 표현이 없어요. 16조의2를 쭉 보시면 ‘조정하게 할 수 있다’거든요. 의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의무는 공익직불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법 조문의 취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되……

○**전종덕 위원** 이걸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그건 공감을 하는 거니까, 다만 의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저는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하면 예산의 범위가 인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모두 작물 자체를 변경해서 심는 그런 게 무난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 말씀은 현장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전략작물 대체에 관련된 사업들은 꾸준하게 해 왔던 사업들 중에 한 가지였었고요. 대부분 보면 목표에 미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왜냐 그러면 비록 소득이 그 부분에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써 좀 더 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령화되고 현장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옮겨 가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자치단체를 찾아보시면, 특히 경북의 자치단체들 중에서는 농업대혁신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일정 부분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는 또 경작하는 방식 자체를 하나의 농업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변경시키고 거기에 많은 농민들이 현물출자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또 미니멈은 그동안 일반작물, 그러니까 벼 작물을 심었을 때 받는 수익금을 미니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그런 쪽도 해 보면 보통 2배 내지 많게는 3배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 농업도 개인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좀 조직화시켜서 이모작도 하시고 하면……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다 된다 이런 말씀들은 현장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일단 농민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정책에 호응을 해야…… 뭔가 자기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호응을 하는 거지. 인센티브가 없는데 농민들이 이 정책에 따라갈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 흔히 말하는 벼 재배를 하고 있는 그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농기계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도 따라붙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아마 하셔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준병 위원** 생산 조정,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

들에 실질적으로 유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넣었습니다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삭제해도 좋은데 다만 2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 대상자에게 미곡의 재배면적을 감축·조정하게 하는 경우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의 지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할 경우에는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의 미곡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문구는 반영을 시켜 놔야 이 부분과 관련된 정책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2항만은 꼭 반영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 규정은 농업인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문구 넣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12번 미곡 조정의무 제도는 아까 107페이지 이원택·박희승·신장식·문금주·임미애 의원안 정도로 수용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제가 발언한 2항도 넣겠다고, 미니멈 수준은 정하겠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의무……

○**강명구 위원** 아니면 날짜를 다시 정해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합시다. 방법이 없어, 그러면. 오늘 끝내고 오후 3시에 소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농민단체하고 지금 2시에 토론회가 있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2시 말고 3시부터 하자고.

○**정희용 위원** 1시간 만에 끝날 토론회인지……

○**전종덕 위원** 4시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4시에. 저도……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제 의견 따라 주세요. 다 고려를 못 하겠어. 전종덕 위원님 토론 시간이 길다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잖아요.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안이고 어쨌든 이것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희용 위원** 우리는 3시로 정할 수가 없어요. 토론회에서 농민단체 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와야지 우리 소위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종덕 위원** 여기서 통과하려면 이게 중요한 법이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1시간이면 되잖아. 1시간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강명구 위원** 약속을 지켜 주셔야지요. 12시까지 하기로 한…… 당대표하고 다 약속을 해 가지고……

○**정희용 위원** 그리고 오늘 예고하지도 않았고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회의 진행이 안

된 걸 가지고 오후에 또 갑자기 하자고 그러면……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고 이만희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다 의견 개진하도록……

○**이만희 위원** 의견 개진 나 2분 했어요, 2분.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손을 들면 다 해 주도록 했으니까……

○**강명구 위원** 강명구 위원 의견 개진 1분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만희 위원** 아니, 우리 오늘 대표님하고 이따 오찬도 있고 다 그러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점심 한 다음에 오후 3시에……

○**전종덕 위원** 3시 반에 하시지요.

○**강명구 위원** 그러면 4시에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4시?

○**문금주 위원** 4시에서 몇 시에?

○**윤준병 위원** 4시부터 끝날 때까지……

○**전종덕 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조정하십시오, 일정을.

○**강명구 위원** 간사들 상의하시지요, 그것은.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상의 못 하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해 버리고……

○**강명구 위원** 상의를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윤준병 위원** 그러면 4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시지요.

○**문금주 위원** 대신 끝나는 시간을 정해 줘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4시에 하지요.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끝나는 시간은?

○**윤준병 위원** 4시부터 계속해야지, 뭐.

○**문금주 위원** 계속 못 해.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6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107페이지 수정안은 의견 모아진 걸로 보면 되지요?

잠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은, 횟수는 통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점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반복해서는 하지 맙시다.

○**임호선 위원** 정부 측에서 아까 16조의3 2항을 처음에 불수용한다고 하셨다가 다시 또 수용의견으로 바꾸셨는데 이 부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담기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일단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항을 받은 이유는……

○**소위원장 이원택**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07페이지입니다.

법률 잘 아시는 강명구 위원님도 계신데 법리적으로 볼 때 어떤 의무나 책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에는 그게 없어서 법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그 1항의 전단은 저희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준병 위원님께서 재배면적을 잘 조정할 수 있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구를 협의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마지막 심사 끝나고 정부 측하고 수석전문위원 간의 합의된 문항을 낭독하면서 통과시킬 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10페이지,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이것은 뭐 다른 의견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14페이지는 수정의견대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페이지로 보면 121페이지까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정의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문금주 위원** 이 안은 어느 안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수정안으로.

○**문금주 위원** 수정안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122페이지,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관련해서 근거 마련하는 것 이것은 지금 문대림·송옥주·이원택·박희승·신장식·문금주·임미애 의원안으로 수용하기로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공공수급미곡 관리·운용 이것은 계약재배를 전종덕 의원님이 넣으셨는데 어차피 공공비축미를 정부가 수매하기 때문에 계약과는 상관없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은 전종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종덕 위원**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육성하기로 하고 확대하기로 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계약재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라도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비축미에서 친환경 쌀을 우선 매입하고 있고 대책을 만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은 쌀들은 저희들이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현장에서 간담회를 해 보면, 저희 전북에도 친환경 쌀을 생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수매는 걱정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전종덕 위원** 이 조항은 어찌 보면 정부가 책임 있게 친환경 농업이나 계약재배를 해서 공공 수급 급식으로 활용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놓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수요처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법률 근거를 넣어 놓으면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녹색제품으로 인증을 받게 해서 좀 우대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문구를 좀 조정해서라도……

○**소위원장 이원택** 공공급식을 의무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제품을 쓰라고.

○**전종덕 위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을 계약재배한다는데 이건 좀 양해해 주시지요. 지금 친환경 쌀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윤준병 위원** 124쪽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근거 마련, 이 내용을 그냥 안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수용 안 하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24페이지 말씀……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122쪽에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근거 마련해 주는 것 수용 안 하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수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가운데 있는 안을……

○**임호선 위원** 문대림·문금주 의원, 가운데 안을……

○**윤준병 위원** 수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대등소이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127페이지……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이 16조의3을 조금 수정해서 좀 문구를 담아 주시면……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어떻게 수정을 해요? 그러면 수정안을 내 보세요.

○**전종덕 위원** 친환경 농업을 계약재배해서 공공급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구를 좀 수정해 가지고 이걸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구 수정을 좀 해 보고……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친환경 쌀을 다 우선 수매하는데 지금 친환경 쌀을 전체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을 수매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그냥 올해 생산되는 쌀은 다 매입을 하기로 했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여기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을 계약재배를 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계약재배의 주체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우리 정부는 될 수 없고요. 사실은 공공급식에 쓰려면 급식을 공급하는 학교라든지 여기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또 예산 제약도 있고 하니까…… 물론 많이 씁니다. 학교 급식 할 때는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40%를 학교 급식에 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늘리는 방향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그 친환경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두 차례 한 바가 있는데 수매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농민들이 이걸 안 해서 문제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종덕 위원** 이걸 근거를 만들어 놔야 농민들이 다 하겠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이미 하고 있는데……

○**임호선 위원** 일단 그 의지의 문제를 이렇게 법적 의무로 혹은 권장으로 가는 거는 조금 지켜보고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전 위원님?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그러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걸 친환경 쌀로 한다는데 350만t 기준으로 하면 35만t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친환경 쌀을 어느 정도 매입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식량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벼 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일반벼 농사 지으시다가 친환경 벼로 재배하시는, 전환하시는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시면 전량 15만t 이내에서는 저희가 다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15만t?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정도 되네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변상문**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년 차 신곡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물량이 한 15만t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전환하시는 농가분이 희망하면 다 매입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16번 미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130페이지에 보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131페이지까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특별하게 이견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 마련, 133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는데 아까 특별하게 이견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34페이지,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근거 마련 이 부분도 수정의견 13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정부는 2안으로 수용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정의견 1안과 2안이 있는데 2안으로 수용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37페이지에 공포 후 1년, 시행 기준이요. 다른 거 없으시잖아요?

이것과 연계된 법안,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저희가 그 가격 관련해 가지고 가격안정제 그것을 아까 농안법에 담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양곡법에 담자고 했고.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전종덕 위원 67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좀 이따 조문 심사할 때 얘기하세요.

○전종덕 위원 또 다시 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

○전종덕 위원 요지는 여기 양곡법에……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지금 진척이 안 되니까.

○전종덕 위원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진척이 안 되니까.

아까 이거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정부 의견 같이 가기로……

다시 할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정부 의견만 듣지요.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 그 부분, 정부 의견 짧게 한번 다 얘기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전종덕 위원님께서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의무’를 빼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법 체계를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 조정은 양곡법에 의하면 임의로 하게 할 수 있고 지원을 하게 합니다. 지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근데 직불법에 보면 어떻게 재배면적을 조정하나 하면 12조에 농업인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고요. 13조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법에 보면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양곡법이랑 반대입니다. 양곡법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여기는 법 체계상 직불금을 깎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없애버리면 직불금을 깎는 것도 없애야 되고 법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는 이 글자 한 자를 단순하게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 전체를 보고 실제로 어떻게 조정할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한 자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재배면적 조정을 직불금하고 연계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넣어 놓으면 무조건 폐널티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위원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법리상 법 체계상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의무가 안 좋으니까 당장 빼자고 하는 건 안 되고 법 체계를 검토해서 앞으로 여기는 빼 버리고 양곡법에 있는 재배면적 조정으로 가자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만 빼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더 검토를 하시겠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법안은 좀 보류하지요. 이것 다 보류하지요. 이것은 별도 심사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의 조항도……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보지요.

○윤준병 위원 시행시기와 관련돼서 1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은 1년 준비하는 건 좋은데 지금 조문 있잖아요. 우리 채무부담행위 치유하는 것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해야 바로 지금 예산 작업할 때 그 부분의 하자는 치유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든지 시기를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기술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나누어 주신 자료가 아까 우리가 양곡관리법에 보면 조문이 1에서부터 19, 부칙까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쟁점이 됐던 조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1번 조문하고 2번 조문은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팬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께서 3번 조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새로 지금 나눠 주신 자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3번의 수정의견에 있는 조문 중에서 3조에 아까 양곡관리 양곡에 대해서도 그 수급 관리계획에 포함됐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그 문구를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이 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1페이지의 5호를 보시면 또 ‘정부관리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도 이 수급계획에 포함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전종덕 위원 정부 설명하고 다른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양곡의 개념에 정부양곡이 다 포함돼 있어서 사실 이렇게 쓰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또 이게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 이게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포함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빼 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포함하는’을 빼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어차피……

○윤준병 위원 1호에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 이거 빼는 건 좋은데 5호에 ‘정부관리양곡 운용에 관한 사항’이 너무 브로드해서 그 내용은 앞으로 실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실제 사전적 생산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비축미나 격리곡이나 또 이 내용과 관련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구체화돼야 되는데 이것 너무 브로드한 것처럼 느껴져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운용이라고 하면 생산·관리하고 있는 것, 어떻게 판매할 건지 다 포함됩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이원택** 또 하다가 추가로 개정하시지요.

그러면 3조에 있는 2항 1호를 말하는 거지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포함한 양곡’을 삭제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2항 1호에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 할 때 그 ‘포함한’ 그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이렇게 문안이 되는 거잖아요.

○**윤준병 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양곡의 수급 관리를……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 이걸 다 날려 버리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지요?

○**임호선 위원** 운용이라고 하는 말이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에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부관리양곡에 우리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이 말씀하신 이렇게 조금 구체화해서 담아도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매입·판매……

○**임호선 위원** 예, 매입·판매 등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좀 구체화하는 말이라서 더 편찮습니다.

○**윤준병 위원** 매입·판매 등……

○**소위원장 이원택** 생산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준병 위원** 정부관리양곡은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매입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매입·판매, 그래요.

○**임호선 위원** 매입·판매 등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매입·판매를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수입양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3조 2항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2항에 대해서 정부 다른 의견, 서로 의견 교환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뭐 다른 건 없으시지요?

○**윤준병 위원** 예,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3페이지 심의의 문제, 매입·판매가격 등 심의 의무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2항의 2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의 8번 항에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강화에서 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해 가지고 '농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요. 다른 건 없으시지요?

○**윤준병 위원** 수급 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부분 신설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가 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어떤 조항이어서 재의요구가 됐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 당시와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조문이 어떤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차관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제 재의요구가 두 번이 됐었고요.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생산량의 수량을 초과하게 되면 의무매입하거나 두 번째 재의요구될 때는 가격이 하락하면 무조건 매입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가격이라든지 생산량에 대한 구간을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입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했기 때문에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는 이걸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심는 그런 신호가 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 당시에 재의요구가 될 때 우려했던 부분은 생산량이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일정 이상 하락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항이 강행 규정이 있다 보니까 쌀 재배면적을 좀 줄이고 쌀 공급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잘못 들어가서 쌀을 다 사 주기 때문에 쌀 재배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재정 소요 문제도 있었고 해서 재의요구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문이 변화가 되면 정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정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양곡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는 지금 2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전략작물 재배를 가지고 완전히 수급 균형을 맞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 들거나 그럴 때는 이 규정을 통해서 수매를 해서 가격안정을 시킬 거고요.

세 번째 축이 그겁니다, 가격안정제도. 너무 떨어지면 일정 비용을 보전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하시게 그런 축으로 돼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우리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유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당시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유연한 안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내놓고 또 당시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 유연한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었다면 더 빠르게 국민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 어떤 탄력적 권한을 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래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 법안을 좀, 잘 모르는 얘기인데……

○**문금주 위원** 제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거부권 될 당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의무매입도 있지만 정부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에 대한 강화를 많이 요구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근데 그 부분은 부각이 안 되고 의무매입만 부각이 돼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언론에서 계속 남는 쌀 의무매입하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공격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전적 수급조절 부분을 정부에서 좀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의무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적 수급 조절을 잘 하면 그렇게 쌀이 남아도는, 의무 매입해서 많이 비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전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이 문항 내용이 본질적으로 예전에 거부권 행사된 문항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은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다를 바가 없는데 예전의 내용은 이 조항을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호도했던 그런 대상이었다. 사실은 예전 조항도 지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이나 이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수준의 문안으로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입도 의무 매입을 수급안정대책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는 의무 매입이 포함되는 거고 예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기준 설정과 관련돼서 의무 매입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에다가 다 위임해 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량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내용 때문에 3조가 들어간다는 듯이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 정부하에서 이 부분을 남용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해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인 것처럼 만들었던 조항이어서 이것은 예전에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음부터는 행정부가 국회를 이렇게 기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희용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들어

갔던 문언대로 이번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재량 규정을 넣느냐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헛갈리시면 안 되는데 양곡관리법이 1차 법안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부권 됐을 때의 법안인데 그 법안은 의무조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됐고. 그래서 2차 때, 그때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좀 더 그러면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2차 법안은 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입니다.

○문금주 위원 지금하고 똑같아.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위원 그런데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했어……

○정희용 위원 그때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돼 가지고 우리하고 속의를 못 했어요.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법안의 내용만 설명드리면 1차 법안하고 2차 법안이 있는데 2차 법안은 현재의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동 기준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법안하고 현재 이 법안하고 큰 차이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법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맞지만, 우리가 그때 2차 법안 만들면서 내용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2차 법안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게 3차째 가는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저는 그 당시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1호 행사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빨간색으로 양곡관리위원회 삭제한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전종덕 위원 여기 1호, 2호에 격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매입을 통한 격리하는 내용인데, 양곡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준 이상으로의 생산량과 가격인데 여기에서 기준은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소위원장 이원택 그 기준을……

○윤준병 위원 거기 1호, 2호 들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소위원장 이원택 대통령령에서, 이제 시행령에서 세팅을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범위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소위원장 이원택 참고로 양곡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생산자 대표가 몇 명 이상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3분의 1……

○윤준병 위원 5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5명.

○소위원장 이원택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이 안에, 68페이지 우리 자료 보시면 여기에 이원택 간사님이 내놓은 안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구가.

문금주 위원님하고 이원택 간사님이 내신 의안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으로 이 것을 매입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 없고 저희가……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것은 시행령에서……

이런 겁니다. 3%·5%, 5%·7%, 초과생산량 3%·5% 그다음에 가격하락률 5%·7% 이 기준인데……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살아 있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이제 이 시행령에서 세팅이 돼야 되고……

잠깐 제가 기억을 상기해 드리면 이 시행령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정희용 위원 고시로 돼 있던……

○문금주 위원 의심하지 말아.

○소위원장 이원택 시행령 초안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 그랬고. 이 시행령 안에서 우리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지금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양곡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많이 준 겁니다. 정부 권한을 뺏어서 장관의 권한을 뺏어서 양곡심의위원회에 권한을 준 형태고요. 거기에 생산자 대표를 집어넣고 그렇게……

○전종덕 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거부권 법안에는 5%·3%, 5%·8%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법안에서는 그것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매입한다는 그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맞아요.

○윤준병 위원 지금 현재 그래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은 맞는 거고 그래서……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가격을 농안법으로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행령으로 잡기로, 1차 법안 때는 법률로 넣었다가 2차 법안 때는 시행령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사실상 똑같은 거고.

○윤준병 위원 가격하고 그것은 다른 건데.

○**소위원장 이원택** 똑같은 거고, 이제 문제는 시행령에 세팅이 되는데…… 3%·5%, 5%·7%라도 저희들 입장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시행령 초안을 보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시행령 초안이 보고되면 우리가 또 논의를 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은 고시로 돼 있고요.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옮겨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초안을 저희들한테 사전보고 하기로 돼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기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지난 법안도 얘기는 했지만 시행령은 법 이외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법은 먼저 만들어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 시행령으로 계속 넘기면 법으로 명확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윤준병 위원** 일단은 우리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삭제한 내용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시행령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보고 그 내용이 미흡하다 그러면 법에서, 입법을 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또 개정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출발이니까 그 시행령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대신 사전보고 해서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설정하도록 위임을 해 보고 전문적인 의견들도 보고……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이 고지되기 전에 공식절차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절차 진행하기 전에 보고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보고드려야 됩니다.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저희들은 아까 그 발동 조건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가 1차 법안 때는 넣었지만 2차 법안 때 뺐는데 그때 수용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1차 법안으로 돌아가는 게 좀 그래서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정확하게 담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강화된 안을.

○**전종덕 위원** 법에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질문 끝났으면 넘어가고요.

7페이지인가요?

○**임호선 위원** 아니, 5페이지 하단.

○**소위원장 이원택** 5페이지 양곡 시장격리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쭉 돌아가서 7페이지에 아까 윤준병 위원이 요구한 것 다 들어갔네요.

○**윤준병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8페이지에 공공비축양곡 제도 개선,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문제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페이지에 미곡 재배면적 관리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사실은 이 수준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정 대상자에 대해서 실제 좀 더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면 지금 쌀농사 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을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에다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 원칙 정도는. 그래야 우리가 대체작물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가능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말씀드리면 쌀 소득보다 높은 가격,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할 때 재정 문제, 나중에 가서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위원님……

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한다면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도 선언적으로 넣어 놓으면 충분히 입장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고요.

쌀 소득보다 높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재정 당국에서의 입장이라든지 또 재정 문제 또 그것을 개선하는 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전략작물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 앞에다가 ‘충분한’이라는 표현 하나 넣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인센티브를.

○**윤준병 위원** 어디에다가 ‘충분한’이라고 넣어?

○**소위원장 이원택** ‘재배면적 조정하게 하는 경우 충분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니면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그렇게 하시면……

○**윤준병 위원** 보조금의 충분한 지급 등……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문언을 매끄럽게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급 등, 충분한 지원……

○**소위원장 이원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이러면 되겠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정도면 저희들한테도, 이게 대통령이 또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금주 위원** 법안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좀 그렇지.

○**소위원장 이원택** 예, 아무튼.

○**임호선 위원** 저요.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공공비축양곡 제도 개선 개정안 관련해서요.

○**전종덕 위원** 몇 페이지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페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8쪽 10조.

○**윤준병 위원** 10쪽?

○ **임호선 위원** 아니, 이것 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8쪽.

○ **임호선 위원** 아니, 8쪽 10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과 관련해서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하며, 그렇지요? 그 물량이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 **임호선 위원** 물량은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법에 담을 이유가 뭐지요?

○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 **임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차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국제기구의 권고가 우리 법적 의무로 담기게 되는데 굳이 우리 법에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식의 의무를 우리가 굳이 법에다가 담을 이유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이유는 없습니다.

○ **임호선 위원** 그러면 없으면 이렇게 담으면 안 되잖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을 사라, 어떻게 사라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정부가 최대한 많이 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측면에서 사실 국제기구의 권고를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타협하는 차원에서 3분의 1, 4분의 1 빼고 최소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 **임호선 위원** 아니, 왜 국제기구의 권고가 우리나라나 국민들에 의무가, 왜 장관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이제……

○ **임호선 위원** 그냥 지금 조항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살 때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FAO의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이 더 맞다고 보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면……

○ **임호선 위원** 여야 위원님들 국제기구의 권고를 우리 장관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식의 이것은 좀 저는 대한민국국회의 권위에 또 대한민국국민……

○ **정희용 위원** 임호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문금주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정희용 위원** 그런데 잘 못하면 또 집어넣으면……

○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지난번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에 국제기구 기준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난 거부권 법안에.

○ **임호선 위원**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하시면서 문구를 이렇게 하신 거여서, 그러면 그전

예 과거에 우리가 거부권 행사되었던 법안으로 다시 회귀하시지요.

핵심은 공공비축미를 확대하라는 게 핵심이고 이것 정권에 따라서……

○**임호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게 왜, 국제기구의 권고면 권고지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문금주 위원** 지난번 거부권 행사 법안에 그렇게 돼 있었어?

○**전종덕 위원** 권고보다 확대해야 된다, 이게 확대가 사실은 이 조항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 버린 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임호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면 더 의무, 우리나라 정부가 권고를 따라야 되는 모순이 생기고요.

○**문금주 위원** 지난번 거부권된…… 내가 봐서는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윤준병 위원** 예전에 없었어, 이거.

○**문금주 위원** 그런 말은 없었어.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낸 법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낸 법안이 대안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

○**전종덕 위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

○**문금주 위원** 아니라니까, 대안 안 됐다…… 확인해 봐. 그러면 이것 없애.

○**전종덕 위원** 아니, 지난번에 마지막에 행사됐던 거부권 법안에 국제기준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원택 간사님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확대고 이것을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서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문구를 고치신 것이기 때문에……

○**문금주 위원** 확인해 봐.

○**정희용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확인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정하면 되지.

○**전종덕 위원** 그냥 확대 조항으로 그러면 넣으십시오. 그러면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지금도요 국제기구보다 많아서 문제고요. 저희들은 사실 쌀을 줄이면서 비축도 줄여야 되는데 지금도 창고에 120만t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당연히 자급률 차원에서 있어야지요, 늘려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희용 위원** 위원님들 최종 정리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관련해서 지금…… 쌀값이 얼마지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산지는 20만 7430원입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분들 걱정은 쌀값을 또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축 물량을 풀 것 아니냐, 풀게 되면 또 신호가 잘못 들어와서 가격 확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안에 가격을 맞추기 위한, 그러니까 비축도 하지만 이것은 비축 물량을 풀 때에 대한 제한조건도 법안에 지금 제안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양곡 판매할 때 가격이랑 시기 라든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전에는 저희들이 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판매량하고 시

기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가 정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전문가들 계시고 생산자가 계시니까,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의견, 이걸 풀면 가격이 정말 내려갈까 올라갈까 하는 전문적 지식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희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제 법적으로 조문화시키는 거고요. 예전에도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동 조건을 이제 다 시행령으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정희용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발동이 된다, 그러면 재정이 어떻게 소요가 된다 이게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예측을 해 나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런데 저희들은……

○정희용 위원 너무 막연하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은 재정 소요가 예측이 안 되는 게 저희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추계에서 전략작물직불제 하면서 수급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후단에 있는 경매는 안 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정희용 위원 최대한 소요가 안 되게 하는 게 선제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추계는 사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시장 경매에 드는 비용은 안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아까 공공비축양곡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목표를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윤준병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넣는다고 그러면 ‘국제기구 권고 등’ 이것을 빼고 ‘식량의 자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원래의 취지에 의하면 용어는 그렇게 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저도 그렇게 수정안을 내려고 했는데 먼저 내 주셔서……

○윤준병 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저도 그게 훨씬 나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임호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대안에 결국은 우리가 식량안보적 관점에

서 얼마만큼의 식량을 비축할 거냐. 현행 비축량이 적절한 거냐, 아니면 더 높여야 되는 거냐, 앞으로 기후위기라든가 전쟁위기 대비해서.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국제기구의 권고라는 말이, 제가 성안했던 법안 중의 하나인데 그때는 FAO 기준이 퍼센티지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좋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식량안보의 어떤 작은 목표를 고려해서 이런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팬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종덕 위원님 팬찮으시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님 하실 얘기 있나요?

○**전종덕 위원** 이 조항과 관련해세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이제 전체 마무리 다 끝났으니까.

○**전종덕 위원** 그래서 가격안정 기준을…… 어쨌든 수급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생산량이나 가격의 기준에 의해서 시장격리나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양곡법 안에.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농안법으로 넣을 문제가 아니라.

○**문금주 위원** 정부에 재량을 드립시다.

○**전종덕 위원** 예?

○**문금주 위원** 정부에다가 재량을 드리게요. 그리고 우리가 거부권 행사될 때 2차 수정안도 그렇게 돼 있었고.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법안은……

○**문금주 위원** 사정변경이 없는데 왜 굳이……

○**전종덕 위원** 법안이 먼저 명확하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후속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담을 거니 그걸 예상해서 법안을 만들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문금주 위원** 지금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종덕 위원** 그건 아니지요. 법을 만들고 나서 그 법에 기초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성안을 한번 해 주세요.

○**전종덕 위원** 저는 그래서 그 가격안정제를……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발동 조건을 여기 법에다 박자는 거예요, 법률에다가?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우리가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의 법에 공정가격하고 기준가격을 근거해서 가격안정 내용을 포함한 거잖아요. 그 조항을 그대로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그걸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고.

쌀의 가격은 그냥 공식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나오잖아요, 9월·10월·11월 해 가지고 산출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걸 기준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면서 그 공정가격, 기준가격을 나눴던 정의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공공비축미 기준가 말고 생산비와 플러스알파 수급조절이나 물가상승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 부분은 가격에……

○**전종덕 위원** 포함해서 그걸 하기로 한 거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쌀의 가격을 산출할 때 쓰는 거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차액을 보전해 줄 때 산출하는 기준하고, 지금 이건 양곡의 매입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산출하는 기준이잖아요. 이걸 좀 달리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종덕 위원** 아니, 추가로 갖고 온 것 4페이지에 보면 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를 위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거나 이럴 때 매입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격리를 시켜 주거나 이것을 매입을 할 때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자라고 지난번 회의에서 공정가격 팔호 열고 기준가격으로 하자고 정한 거고 이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생산비 플러스 수급상황이나 물가상승 이런 상황을 보자.

저는 농민의 땀의 가치를 넣자고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공정가격, 기준가격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매입을 하도록 우리가 지난번 거부권 행사할 때 그 법안에 그 취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 간사님 말씀대로 하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이걸 매입하거나 격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가격안정제, 차액을 지원하는 조항은 농안법으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논의한다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넘기기로 했으니까.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저는 안 넘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소위원장 이원택** 넘기기로 아까 했으니까.

○**윤준병 위원**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 아까 넘기기로 했으니까 농안법 하실 때 기준가격이든 공정가격이든 용어부터 해서 다시 보시고, 반대하시기는 하지만 어차피 넘기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가격의 작동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서 그게 3%가 되든 5%가 되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이후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오도록 하고 그 과정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 발동 조건이 좀 강화된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려 온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것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지금 약간 좀 길게 잡고 있는 건 이만희 위원님이 이것 의결할 때 본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내가 5시 전후해서 의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오고 계신다고 그래서……

○**임호선 위원** 기다리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방망이 두드려요? 아니면 기다려야지……

○**임호선 위원** 기다려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기다려야 돼서 시간을 약간 잡고 있었습니다.

○**윤준병 위원** 언제 오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소위원장 이원택** 3분 안에 오신답니다.

○**윤준병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걱정하신 것, 재정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있을 텐데 예전과 달라지는 내용이, 사실은 예전에 재정추계를 하는 내용이 사전적 생산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돼서 그 내용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후의 가격하락이나 수급안정대책을 추후에 수립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성이 예를 들면 95%다. 그러면 이후에 격리해서 드는 비용이 1조라고 하면 5% 곱하기 1조잖아요.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돼요, 그 내용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전적 생산조정을 좀 제대로 해서 계획상으로 한 4000억 이상 넣으려고 그러는데 4000억 정도 투입하면 지금보다 거의 한 두 배 정도 가거든요, 2400억이니까. 두 배 정도 가면 실질적으로 유인이 제대로 될 거다. 그러면 그 확률이 500억이면 전체 토텔로 우리 추계한 다음에 확률상 95%에 500억 하니까 한 4400억 내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추계가 되고.

만약에 사전적 생산조정을 잘 안 해 가지고, 예전처럼 2400억 투입했는데 물가 당국에서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50% 이상이 돼 버렸다. 그러면 1조의 50%는 5000억이잖아요. 그러면 5000억 더하기 2000억이니까 한 70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재정추계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전적 생산조정에서 4000억 이상 투입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후에 들어갈 내용은 시장매입을 하면 1조 원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능성이 한 5% 이내로 떨어지니까 그 금액 가지고 정리가 다 될 거다, 이것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국정기획위원이어서 저희보다 정보가 좀 빠릅니다.

○**정희용 위원**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은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수급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수입안정보험 등을 통해서 보완하겠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큰 틀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위원님도 반대하셨다고, 이게 의무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윤준병 위원** 수입안정보험은 다른 내용이어서, 이 내용하고 작동법이 완전히 달라요.

○**소위원장 이원택** 다르지.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가 농안법 심사 다음 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안법하고 농지법 이렇게 순서대로 갈 텐데 농지법은 각각 위원님들이 개정했으면 하는, 바꿨으면 하는 안을 사전에 보좌관들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을 한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농지법 심사에 체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정안들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차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선제적 수급조절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농지는 75만 8000ha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어야 되는 게 65만 8000이니까 10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2만 4000은 이미 다른 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남는 게 7만 7000인데 6만 1000은 지금 하고 있고요, 1만 6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선제적이라고 하면 연초에 농지가 얼마였는데 농사를 짓으면 얼마가 남는다, 이 남는 면적은 모두 전략작물을 통해서 다른 작물을 쉽게 하겠다는 게 선제적 수급조절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셔야 될 것 같아서.

○소위원장 이원택 일정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전종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배면적 강제감축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란과 논란이 있었고—저는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했습니다만—이렇게 표현되면 당연히 강제감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계속 강제감축이 아니시라고 하니 타작물 재배가 선제적 수급조절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군으로 할당을 하니까 강제적인 게 붙었고요.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원하는 분이 하게 할 겁니다.

○전종덕 위원 강제적 재배면적 감축은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00%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곡법 할 때 구체적 절차를 넣는 것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히 위원님 말씀 기회 드릴 테니까.

저희가 농안법하고 농지법 심사를 해 가야 될 텐데 정희용 간사님, 29일 날? 29일 오전 10시 괜찮으시겠어요?

○정희용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29일 오전 10시에 하고 전체회의를 오후에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29일 날 오전에 법안소위를 하고요.

○정희용 위원 일단 잠정적으로 4시로 해 놓고 소위 결과 보고 다시 그날 구체적 시간 정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리고 해수법안소위하고 농림법안소위를 양쪽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회의는 일단 잠정 오후 4시.

○정희용 위원 잠정 4시로 해 놓고 행정실의 법안 통과 상황을 봐 가면서 미세조정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잠정 4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저도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양곡관리법만큼이나 현재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보탤 수 있는 그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저는 농지법 관련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사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는데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스케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 방식을 밝혀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농업·농촌을 위하고 그 힘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그리고 농지법 분야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

### ○출석 위원(10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립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정책기획관 김정주

식량정책관 변상문